

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서

(년 월 일)

※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
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“○”으로 표시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가족관계등록 연결대상자	성 명	한글	(성) / (명)	주민등록 번호	-			
		한자	(성) / (명)					
	등록 기준지				신고인과의 관계			
	주 소							
	성 명	한글	(성) / (명)	주민등록 번호	-			
		한자	(성) / (명)					
	등록 기준지				신고인과의 관계			
	주 소							
	성 명	한글	(성) / (명)	주민등록 번호	-			
		한자	(성) / (명)					
등록 기준지				신고인과의 관계				
주 소								
성 명	한글	(성) / (명)	주민등록 번호	-				
	한자	(성) / (명)						
등록 기준지				신고인과의 관계				
주 소								
②기타사항								
③ 신 고 인	등록기준지							
	성 명	④ 또는 서명		주민등록번호	-			
	주 소	진 화	이메일					
④제출인	성 명			주민등록번호	-			

작성방법

※ 본 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 또는 등록불명자에 대한 신고가 된 후 그 자가 가족 관계등록을 창설한 때, 또는 가족관계등록이 판명된 때에 그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 본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는 신고입니다.

①란 : 신고인과의 가족구성을 요구하는 상대방을 기록합니다.

②란 : 기타 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합니다.

③란 : 가족관계등록창설자(또는 판명자)의 상대방도 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.

④란 : 제출자(신고인 여부 불문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

첨부서류

1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]

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
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
※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1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

※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